

1. 개정이유

「관세법」은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비품”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주체 및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여 구매기관 및 방식에 따른 전비품을 확인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서 전비품을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전비품 확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물품 관리사무의 위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수품 교환 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비품의 확인 등(안 제3조의2)” 신설

- 1) 관세법 제92조 제2호는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전비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절차를 정하되, 상위부대 또는 기관에서 하위제대의 수입 조달에 대해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각 군 군수사령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정하는 자 등이 전비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정부외의 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입위탁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타법령에서도 수입 절차에서 ‘전비품’을 예외로 정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함.

다.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관련 절차 간소화 (안 제4조)

- 1)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 관리사무 위임 등이 이루어질 경우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함.
- 2)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관리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라.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 경로 추가 (안 제14조)

- 1) 「방위사업법」 및 새로 제정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을 통한 군수품 획득에 대해서 「군수품관리법」에서도 획득 경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 교환계약서의 작성원칙 명확화 (안 제31조)

- 1) 군수품의 교환 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환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명시함.

바. 물품관리공무원의 인수인계 절차 현실화 (안 제39조)

- 1) 시행규칙 제39조는 물품관리공무원이 인계인수 시 모든 종목에 대해 실샘조사하지 못하는 경우 100분의 1 이상의 종목에 대한 표본실

샘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군수품의 품목이 다양해진 현실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실샘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2)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현행과 같이 표본실샘조사를 하되, 관리하는 품목이 많은 기관(부대)의 경우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실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비품의 확인 등) ① 국방관서,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전비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전비품 여부를 확인받아 그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전비품을 수입하는 자와 전비품을 확인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 전비품 확인 요청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1. 방위사업청에서 수입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 이 경우 소요기관(부대)의 장은 전비품 확인서 발급 대상 여부 확인 등 관련사항을 지원한다.
2. 국방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 국방관서의 장
3. 그 밖의 경우, 소요기관(부대)이 속한 군의 군수사령관 또는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자(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전비품을 수입하는 정부 외의 자가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

식의 수입위탁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수입위탁을 확인받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추가 제출한다.

1.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방위사업청장
2. 국방관서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국방관서의 장
3. 그 밖의 경우, 소요기관(부대)가 속한 군의 군수사령관 또는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자(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③ 국방관서, 각 군, 방위사업청에서 전비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 품목에 대한 전비품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요청)서를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영 제4조제1항”을 “영 제4조제2항”으로, “그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을 “다른 중앙관서나다른”으로, “군의”를 “다른 군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생산”을 “연구개발, 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개발을 통해 군수품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중 “한다”를 “하며, 교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체결한다”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종목에 대한”을 “종목 또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종목에 대해”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비품 확인(요청)서

○ 계약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비품 확인 대상 품목 현황

품 명	장비 및 부품번호	수 량	단 위	금 액	비고(업체명)

위 품목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한 전비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부 대) 장

인

수입위탁 확인(요청)서

신청번호 :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 대상물품

사업관리번호	품목명	수량	단가	계	비고

☐ 수입 위탁 사실 확인

화주 및 수입위탁인 (A)	기관명			
	주 소			
수 입 자 (수 입 대 행 자)(B)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관세법 92조에 의한 수입위탁 확인	1. A소유의 물품을 B가 단순 수입 대행 여부 : ①Yes / ②No 2. A와 B간의 납품계약 및 시설공사 계약에 따라 B가 수입한 후 A에게 납품인지 여부 : ①Yes / ②No ※ 정부와 공개입찰등의 방법으로 납품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등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세 대상 아님			
첨부 서류	1. 수입위탁계약서			

위 품목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정부이외의 자가 정부를 대행하여 위탁 수입하는 물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부대)장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전비품의 확인 등) ①</u> <u>국방관서, 각 군 및 방위사업청</u> <u>에서 전비품을 외국으로부터 수</u> <u>입하는 경우(정부의 위탁을 받</u> <u>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u> <u>우를 포함한다)에 「관세법」</u> <u>제92조 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u> <u>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u> <u>8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요청)</u> <u>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자</u> <u>로부터 전비품 여부를 확인받아</u> <u>그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u> <u>다. 다만 전비품을 수입하는 자</u> <u>와 전비품을 확인하는 자가 동</u> <u>일한 경우 전비품 확인 요청 절</u> <u>차는 생략할 수 있다.</u> <u>1. 방위사업청에서 수입하는 경</u> <u>우, 방위사업청장. 이 경우 소</u> <u>요기관(부대)의 장은 전비품</u> <u>확인서 발급 대상 여부 확인</u> <u>등 관련사항을 지원한다.</u> <u>2. 국방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u> <u>국방관서의 장</u> <u>3. 그 밖의 경우, 소요기관(부</u> <u>대)이 속한 군의 군수사령관</u> <u>또는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u> <u>자(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u>

를 포함한다)

②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전비품을 수입하는 정부 외의 자가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입위탁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수입위탁을 확인받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추가 제출한다.

1.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방위사업청장
2. 국방관서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국방관서의 장
3. 그 밖의 경우, 소요기관(부대)가 속한 군의 군수사령관 또는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자(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③ 국방관서, 각 군, 방위사업청에서 전비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 품목에 대한 전비품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요청)서를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31조(교환계약서의 작성) 국방
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6조 단서
에 따른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
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 절차) ①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대리의 개시와 종료의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전임(前任) 물품관리공무원은 그가 관리하는 장부 및 관계 서류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인계서를 인계 전달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후임(後任) 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인계자 및 인수자는 군수품을 실شم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종목에 대하여 실شم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00분의 1 이상의 종목에 대한 표본실شم조사를 하되, 그 기록을 인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교환계약서의 작성) ----

하며, 교환계약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체
결한다.

제3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
관 절차) ① -----

② _____

--- 종목 또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종목에 대해 -----

③ · ④ (생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